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0

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: 송석준・이종배・유동수

조수진 • 정진석 • 권은희

김영식 · 김희국 · 최춘식

윤두현 • 주철현 • 홍석준

김도읍 • 임종성 • 박성중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현행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은 저축 가입 대상인 농어민을 농업협동조합원, 수산업협동조합원, 산림조합원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가입범위가 협소함.

특히, 최근 농어업과 ICT 등 정보통신기술의 결합, 생산방식의 자동화·지능화 등에 따라 농어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가입대상 범위가 좁아 신성장 농·어업분야종사자는 저축가입이 어려운상황임.

이에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인 및 「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에 따른 어업인으로, 그리고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, 생산방식의 자동화·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, 어업 등 분야

종사자로 저축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업 발전에 조력하려는 것임(안제2조제2호).

주요내용

- 가. "농어민"의 범위에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포함함(안 제2조제2호 가목).
- 나. "농어민"의 범위에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포함함(안 제2조제2호 나목).
- 다. "농어민"의 범위에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, 생산방식의 자동화·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, 어업 등 분야 종사자를 포함함 (안 제2조제2호다목).

법률 제 호

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
- 나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
- 다.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 결합, 생산방식의 자동화·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 농업·어업 등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농어민"이란 다음 각 목의	2
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사람을 말한다.	
가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9	<u>가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</u>
조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	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
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	른 농업인
을 경영하는 농업인	<u>나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</u>
나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	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
2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	<u> 어업인</u>
다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	다. 농어업과 정보통신기술의
0호에 따른 임업인	<u>결합, 생산방식의 자동화·</u>
	지능화 등에 따른 신성장
	<u>농업·어업 등 분야에 종사</u>
	하는 사람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